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온라인 전자문서로도 기술인 경력신고,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,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용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민원인 업무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등의 발급신청이 가능토록 개선(안 제8조, 안 제15조)
- 나. 행정업무 수행 관련 시행령 상 인용조항 추가(안 제8조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: 2020. 3. 9. ~ 4. 20.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이하 “경력수첩”이라 한다)”를 “경력수첩”으로, “(갱신·재발급)신청서”를 “(갱신·재발급)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전력기술인”을 “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재발급)신청서”를 “(재발급)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 등) ① (생략)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<u>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이하 “경력수첩”이라 한다)</u> 를 발급·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(갱신·재발급)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③ (생략) ④ <u>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(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)</u> 는 별지 제10호서식,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,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(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. ⑤ (생략)	제8조(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경력수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갱신·재발급)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)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<u>전력기술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)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	제15조(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) ① ----- -----

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(재발급)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· 2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----- -----<u>(재발급)신청서</u> <u>(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</u> <u>다)</u>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159